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951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이종욱의원안)	3

I. 개요

1.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95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욱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26.

(3) 회 부 일 : 2024. 12.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정부는 2024년 1조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수요 부진으로 인해 7,377억원 발행에 그침. 시장에서는 수요 부진의 원인으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혜택 부족과 개인별 연간 매입 한도 제한이 지적됨.

개인별 연간 매입 한도는 정부 고시를 통해 개정이 가능한 상황이며, 세제 지원 확대는 현행법 개정사항임.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분리과세 특례를 유지한채, 5억원(기존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

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로 금액을 확대하고, 이자소득 세율은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9로 낮추고자 함(안 제91조의23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이종욱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특례(안 제91조의23) ○ 적용대상 : 개인투자용 국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유한 사람 시행령 : 발행일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국채를 발행일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 특례내용 : 1인당 매입액 <u>2억원</u> 이하의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에 대해 <u>14%</u>의 분리과세 적용 ○ 적용기한 : (매입일 기준) 2027년 12월 31일	□ 매입금액 한도 확대 및 세율 인하 ○ (현행과 같음) ○ 특례내용 : 1인당 매입액 <u>5억원</u> 이하의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에 대해 <u>9%</u>의 분리과세 적용 ○ (현행과 같음)

* 이종욱의원안 2024. 12. 26. 제출(의안번호 6951)

□ 개정안은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1인당 매입금액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현행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9%로 인하하려는 것임.

□ ‘국채(國債)’란 정부가 「국채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債券)으로, 현재 국고채권, 개인투자용 국채,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등 5종의 국채가 발행되고 있음.

「국채법」에서는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국고채권과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직접 규정¹⁾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주택도시기금법」은 국민주택채권을, 「국고금 관리법」은 재정증권의 발행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국채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개시장에서 발행하고 있는데²⁾,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고채의 경우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인 ‘국고채 전문딜러’³⁾⁴⁾가 응찰금리 및 응찰금액을 제시함으로써 국채 발행물량을 낙찰받아 인수하게 되고 일반인의 경우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 입찰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함⁵⁾.

정부는 국채의 수요기반을 다변화하고 일반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1) 「국채법」

제4조(국채의 종류 등)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 4. 11.>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국채가.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나.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2) 「국채법」

제5조(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②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고채전문딜러”(이하 “전문딜러”라 한다)라 함은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하여 국채딜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채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 포함)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4) 2025년 2월말 기준 국고채전문딜러는 교보증권 등 11개 증권사 및 국민은행 등 7개 은행으로 총 18개임.

5)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7조(입찰참가자) 국고채의 입찰에는 전문딜러, 예비전문딜러 및 일반인(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를 제외한 개인, 금융기관, 기타 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참가할 수 있다.

제12조(일반인의 입찰 및 낙찰 방법) ① 일반인은 전문딜러를 통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② 일반인이 응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대행 전문딜러에게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계좌를 개설한 자는 그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일반인은 응찰금리를 제출할 수 없다.

2023년 4월 국회 의결을 거쳐 일반 개인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의 법적 근거⁶⁾를 마련하였으며, 2024년 6월을 시작으로 매월 발행하고 있음.

개인투자용 국채는 5년물⁷⁾, 10년물, 20년물이 있고, 표면금리는 직전월 동일 연물 국고채의 최고 낙찰금리로 하며, 개인의 수요 확대 및 투자 유인을 위하여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데, 가산금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자금의 수요 및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결정함⁸⁾.

[개인투자용 국채 개요]

매입자격 및 투자금액	• 매입자격: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 •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2억원
종목	• 5년물, 10년물, 20년물
상환조건 및 적용금리	•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수령 •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 지급 * 표면금리: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 * 가산금리: 시장상황 등 고려 매월 결정·공표 •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유통·환매	• 상속·유증·강제집행 외 소유권 이전 불가 •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 가능(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 미적용)

6) 국채법(법률 제 19327호, 2023. 5. 12. 시행)

7) 2025년 3월 신설

8)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종목) ① 개인투자용국채의 만기는 5년, 10년, 20년으로 한다. 다만,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타의 만기로 발행할 수 있다.

제5조(금리) ① 개인투자용국채의 표면금리는 직전월 동일 연물 국고채의 최고 낙찰금리로 한다.

② 개인투자용국채의 가산금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자금 수요 및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월 결정한다.

정부는 2024년도 1조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청약 부진으로 2024년도 발행액은 7천억원 수준에 그쳤음.

2024년 6월 최초 발행 이후 최초 2차례(6월과 7월) 공모 시에는 발행계획 금액 대비 청약금액이 컸으나 이후 청약 수요는 발행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추세였는데, 2025년 3월 5년물 신규 출시 이후 대다수 청약이 5년물에 몰린 점을 미루어 볼 때 장기간 유동성 제약이 개인의 국채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4							'25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월	2월	3월
월별 발행계획*	10,500	2,000	2,000	2,000	1,500	1,500	1,500	3,200	1,000	1,000	1,200
월별 청약금액	10,846	4,262	3,207	1,897	455	539	486	2,935	869	505	1,561
월별 발행금액	7,377	2,000	2,000	1,897	455	539	486	2,574	869	505	1,200
5년물 (월별 발행금액 대비 비중 %)	-	-	-	-	-	-	-	(30.7)	-	-	(65.8)
■ (당초) 발행계획	-	-	-	-	-	-	-	600	-	-	600
■ 청약금액	-	-	-	-	-	-	-	1,151	-	-	1,151
■ 발행금액	-	-	-	-	-	-	-	790	-	-	790
10년물 (월별 발행금액 대비 비중 %)	(81.1)	(61.6)	(85.2)	(92.8)	(85.2)	(90.2)	(84.6)	(59.1)	(84.8)	(85.5)	(29.4)
■ (당초) 발행계획	6,600	1,000	1,500	1,500	1,300	1,300	1,300	2,100	800	800	500
■ 청약금액	9,038	3,493	2,910	1,761	388	486	411	1,522	737	432	353
■ 발행금액	5,569	1,231	1,703	1,761	388	486	411	1,522	737	432	353
20년물 (월별 발행금액 대비 비중 %)	(18.9)	(38.4)	(14.8)	(7.2)	(14.8)	(9.8)	(15.4)	(10.2)	(15.2)	(14.5)	(4.8)
■ (당초) 발행계획	2,600	1,000	500	500	200	200	200	500	200	200	100
■ 청약금액	1,397	769	297	136	67	53	75	262	132	73	57
■ 발행금액	1,397	769	297	136	67	53	75	262	132	73	57

* 자료: 기획재정부

□ 개정안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실질 수익률을 증대시켜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국내 경기 둔화, 인구 고령화 및 저출생 등 재정지출 확대 소요에 따른 국채 발행 증대에 대비하여 국채 투자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4년 1,177.1조원(GDP 대비 46.2%)에서 2033년 2,087.5조원(57.7%)으로 연평균 6.6% 증가 전망되고 있는바, 향후 증가할 국채발행에 대비하여 기존 기관 중심의 국채 투자에 더하여 개인의 국채 투자가 확대된다면 원활한 재정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국가채무 추이 및 향후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30	2033
국가채무	1,177.1	1,280.3	1,369.8	1,465.4	1,565.2	1,779.2	2,087.5
GDP대비 비중	46.2	48.2	49.6	51.0	52.4	55.1	57.7

국회예산정책처, 「2024~2033 NABO 중기재정전망」

둘째, 투자자 다양화를 통한 재무위험의 분산 및 시장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현재 소수에 머물러 있는 투자 주체인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의 확대가 필요한 점이 있음.

재무위험의 분산 및 시장 변동성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투자 시계(time horizon), 위험 선호도, 거래목적 등이 상이한 경제주체

가 국채를 분산 보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국채 수요기반의 다변화를 통해 국채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2023년 말 기준 개인의 국채 보유비중은 국내기관 78.1%, 외국인 20.4%, 개인 1.5%로 국채 발행량의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음⁹⁾.

□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의 인하와 한도액 확대는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시키는 측면이 있음.

동 과세특례¹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른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도 적용받을 수 있고¹¹⁾, 낮은 위험-낮은 수익의 특성을 가진 국채에 현행 한도액(1인당 2억원)을 초과하여 최소 5년 이상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층이 될 것으로 보임.

9)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 및 장기저축 수단 제공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 첫 발행”(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5.30.)

10)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둘째,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의 인하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실질 수익률을 증대시켜 회사채 등 민간부문의 다른 채권 투자를 구축(驅逐)할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음.

회사채의 경우에는 투자대상과 기간이 다르긴 하지만 채권으로서의 저위험·저수익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10년·20년물 등의 장기 채권 또한 존재하는 바, 상대적으로 실질수익률이 낮아진 민간 부문의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수요가 감소하여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